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6장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제6장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1 2023서울조정731·732/733·734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알림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종교단체가 개최한 정치집회에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강제 동원되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방송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해당 영상 더보기란에 강제동원 주체를 명확히 하는 알림보도를 게재할 것을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한 종교단체가 개최한 정치집회에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강제 동원되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보도 내용이 신청인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제목에 신청인의 이름을 적시하여 신청인이 주최, 참여한 집회에 신청인 또는 주최 측이 그룹홈 거주 아동들을 강제동원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또한, 보도 영상에 '극우집회 강제 동원'이라는 자막을 표시함으로써 신청인 주최 집회에 마치 폭력이 난무한 것처럼 폄훼하였고, 댓글에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이 다수 게재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보도는 한 그룹홈의 아동학대 의혹을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인과는 관련이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다만, 보도 제목의 수정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보도 제목의 수정뿐 아니라 '강제동원'과 '극우집회'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정을 원한다는 입장이었다.

중재부는 보도 내용이 신청인과 관련이 없음에도 제목에 신청인의 성명을 적시한 것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알림보도 게재와 함께 유튜브 댓글에 의한 피해의

회복 조치로 유튜브 채널의 해당 영상 하단에도 알림보도를 고정하여 배치할 것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앵커] 이 그룹홈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종교단체가 개최한 정치집회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원장은 그러나 이들이 외출하고 싶어해서, 원해서 데려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략]**
[리포트] X년 전 ○○○○○○ △△△ 목사가 개최한 대통령 퇴진 시위. **[중략]**
추운 날씨에 혼자 셔츠 바람으로 태극기를 든 소년이 눈길을 끕니다. 그룹홈 □ 원장이 보호하던 아동입니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알림보도문

보도제목: [알림] 「'△△△ 집회' 강제동원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보도는 △△△ 목사측이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동원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의 한 그룹홈 원장이 아이들을 강제동원 한 것에 대한 공익보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방법

- 방송사 홈페이지 ☆☆☆뉴스 섹션 '▽▽▽▽▽'면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알림보도문의 제목을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고정하여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알림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알림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 〈◎◎◎◎◎◎◎◎〉 유튜브 채널에서 송출되는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영상에도 알림보도문을 해당 영상 더보기란 최상단에 고정으로 배치하여 다시 게재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2 2023서울조정654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처리결과	조정성립(동영상 플랫폼 조치)

자영업자의 고충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 유튜브에서는 신청인이 언급된 내용을 삭제하고, OTT에서는 출연자의 주장을 알리는 자막을 추가하는 식으로 플랫폼별 조치사항을 다르게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강아지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부부의 고충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하면서, 강아지가 유치원에 다녀오면 담배 냄새가 나고 기침을 한다며 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한 견주가 있었으며, 원장 부부는 흡연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1년 반 후 견주가 인터넷에 흡연 관련 글을 올렸다고 했다. 이에 억울했던 원장 부부가 해당 견주를 고소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사건이 흐지부지되었고, 흡연한 것으로 의심받은 원장은 흡연 검사까지 받았으나 관련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견주'로 보도된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사건임에도 사실확인 절차 없이 신청인이 마치 명확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처럼 방송했다고 했다.

또한, 경찰이 게시글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원장 부부에게 흡연 여부 검사 결과를 요구했음에도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료화면으로 제시된 검사 결과는 사건 발생 당시가 아니라 방송 시점에 실시한 검사 결과라고 밝혔다.

신청인은 원장 부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방송으로 인해 자신이 허위사실 유포자로 매도되는 등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해 출연자의 직업적, 개인적 고민을 공유하는 내용을 방송했을 뿐 출연자와 신청인 간 법적 공방을 다룬 것이 아니라며, 신청인의 정정청구는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중재부는 해당 영상이 신청인을 직접 대상으로 한 보도가 아니고, 형식도 일반 뉴스가 아닌 오락 방송인 점을 감안하여, 유튜브 영상 중 일부에 자막을 삽입하거나 댓글란 상단에 신청인이

원하는 문구를 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청인은 영상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삭제되길 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유튜브는 부분 삭제가 가능하지만 OTT 등에 제공되는 영상물은 계약 관계상 삭제가 어려울 수 있어 신청인이 원하는 자막을 영상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유튜브 영상에는 신청인 관련 사건이 언급된 부분을 삭제하고, OTT 영상에는 자막을 추가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원장 A : '유치원만 갔다 오면 담배 냄새가 난다. 유치원을 가면 기침을 하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담배를 피운 사람으로 지목한 사람이 남편이고. 저희는 일단 지금까지 7년 동안 운영하면서 담배를 피우지를 않았고, 직원도 흡연자를 뽑지 않아요. 저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걸 계속 의심을 하시더라구요. 흡연을 한다고. 그래서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1년 반 있다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니까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가지고 양쪽에서 다 자료부분이나 증거자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진행자 : 흐지부지 됐구나.]
[원장 B : 제가 그 (흡연 여부) 검사도 받았어요. 흡연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0'이 나왔어요.]
[진행자 : 아예 간접 흡연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원장 B : 제 주변 자체가 흡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후략]**

조정성립사항

동영상 플랫폼 조치(일부 열람차단 및 기사수정)

- 피신청인은 20XX년 X월 XX일까지 조정대상보도의 영상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 유튜브 영상 기준	8:47경 ~ 9:57경 (신청인 사례 언급 부분)	해당 영상 부분 삭제

- 피신청인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종합유선방송(CATV), OTT(△△△, □□, ◇◇◇◇)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VOD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각 방송사업자에게 조정대상보도의

영상을 기존 것에서 수정된 영상으로 변경하도록 조치한다. 단, 계약 내용상 위 수정된 영상으로 변경이 어렵다면 아래와 같이 수정된 영상으로 대체한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수정 전</th><th>수정 후</th></tr>
<tr><td rowspan="3">9:05
~9:12</td><td>음성</td><td colspan="2">원장A: 저희는 일단은 지금까지 7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담배를 피지를 않았고 직원도 흡연자를 뽑지 않아요.</td></tr>
<tr><td rowspan="2">자막</td><td>흡연은/절대 NO</td><td rowspan="2">※출연자의 주장입니다.
(자막 추가)</td></tr>
<tr><td>직원도 흡연자로 뽑지 않아요</td></tr>
<tr><td>9:49</td><td>영상</td><td>(의사 소견서 이미지 표출)</td><td>※출연자의 주장입니다.
(자막 추가)</td></tr>
</table>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3 2023서울조정2695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국가기관
피신청인 매체유형	유튜브 채널
처리결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경찰에 의해 불송치 결정된 사건이 재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과정에 대검찰청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유튜브 방송에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고, 유튜브 댓글란에도 반론보도문을 고정 게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당한 피신청인 소속 언론인이 처음에는 경찰조사에서 불기소되었다가 검찰의 재수사 지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이는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경찰서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공문으로 접수한 후 추가 수사를 한 결과 피고소인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일 뿐, 대검으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지시받거나, 답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여 경찰 조직 및 수사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보도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신청인 입장은 반론 형식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피신청인 언론사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동영상 보도물을 게재하고 있으므로, 원보도문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자가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고, 해당 영상 댓글에도 반론보도문을 고정 게시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진행자 : 어제 △△△△ 이□□ 기자를 제가 명예훼손 했다고 고소고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중략]**
[진행자 : 경찰은 뭐 불기소 송치했는데 검찰이 재수사하라고 지시했던 사건인데, 어제 송치가 됐어요.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가 됐는데 언론보도에서는 경찰이 이런저런 혐의가 있어서 송치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아닙니다.] **[중략]**
[진행자 : 이거는 얼마 전에 대검이 지시를 한 거예요.] **[중략]**
[진행자 : 검찰이 가져간 거예요.] **[중략]**
[진행자 : 처음부터 오더가 내려오는 거예요.] **[중략]**
[진행자 : 이렇게 저렇게 답을 정해 놓고. 이건 수사가 아니죠.]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김◇◇ 명예훼손 혐의 송치관련 경찰 입장
본문내용: 조정대상보도에서 전 △△△ 이□□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재수사하던 ☆☆☆☆경찰서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사실은 대검이 답을 정해 놓고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송치결정을 한 것이다.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거나 검찰로부터 수사결과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은 유튜브 채널에서 반론보도문을 진행자 김◇◇이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 동영상 하단 댓글란의 최상단에 고정 댓글로 반론보도문을 게시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4 2023서울조정2348·2349·2350/2351·2352·2353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고위공무원)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풍력발전사업자가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 등과 사교모임을 가진 후 사업이 이례적으로 빨리 추진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고위공무원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방송사 홈페이지와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군 △△도 해상풍력사업 관련 해역이용 협의가 진행되던 시기에 경영컨설턴트 한 모 씨가 사업과 관련된 기업인 및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을 초대, 향응을 제공한 의혹이 있으며, 해당 모임에 참여한 기업인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김 모 씨이고, 고위공무원은 관련 부처 차관과 □□□□실의 정책 총괄 부서 선임행정관이라고 보도했다. 덧붙여 해당 모임은 김 씨의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를 앞둔 시기에 개최되었으며, 김 씨의 사업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난 후 2년여 만에 주요 인허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등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해상풍력사업은 □□□□실 내 타부서 소관으로 신청인 소속 부서 담당이 아니었으며, 해당 모임은 해역이용 협의가 완료된 이후 개최된 것으로 모임 후 관련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자료화면에 사용된 사진은 신청인과 관련이 없고, 신청인은 모임에 참석할 당시 김 모 씨가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지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사진, 명함, 직책, 성명 등을 노출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공직사회 평판이 훼손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2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실 공직자의 신분으로 모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고, 주최자와의 관계, 모임 참석 경위 등에 대해 수차례 질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게다가 국가수사본부가 해당 모임에서 공직자들이 제공받은 향응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내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보도가 고위공직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와 관련이 있고,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합리적 의혹 제기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에 대한 다소 과장된 의혹 설정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나, 신청인이 공인인 점, 해당 모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인 점, 신청인의 반론을 듣고자 했으나 신청인이 자리를 피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이를 고려해 조정안을 협의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고위공직자인 신청인의 비실명화 요구와 정정보도 요구는 수용 불가하나 반론보도를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도 반론보도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중재부는 방송사 홈페이지와 함께 유튜브 채널의 조정대상보도들에도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합의안을 권고했다. 양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②·⑥·⑦ **[전략]**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그리고 기업인들이 한 컨설턴트의 주선으로 수상한 접대 모임을 해왔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 ☆☆☆☆부는 이 자리가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건 아닌지 추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중략]**
김 씨가 풍력단지 개발을 본격화하던 시기, 관련 고위공무원 2명이 각각 김 씨와 함께 한 씨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박▽▽ ◎◎부 차관과 ◁◁◁◁◁◁ 정책을 총괄하는 ▷▷▷ □□□□실 김ㅅㅅ 선임행정관입니다.
모임은 김 씨의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를 앞둔 때와 해역이용협의가 진행되던 때 각각 열렸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업자를 접촉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씨의 사업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난 뒤, 2년여 만에 주요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속도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차관은 모임엔 참석했지만 김 씨는 기억에 없다고 했고, 현 ♡♡부 대변인인 김 전 행정관은 답을 피했습니다. **[후략]**
③·④·⑤ 직무 관련성이 분명한 공직자와 기업인 사이에 만일 향응이 오갔다면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한 씨를 중심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기업인과 공직자의 인맥들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해 봤더니 수조 원대 해상풍력 사업이 튀어나왔다. **[중략]**
그 뒤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20XX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난 뒤 모든 주요 인허가 절차는 2년여 만에 끝났다. **[중략]**
특히 각종 인허가 가운데 가장 까다롭다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석 달 만에 통과했다. **[중략]**
김 씨는 한 씨가 주선한 자리에도 여섯 차례 초대됐다. 특히 이 가운데 주목이 되는 것은 20XX년 X월 XX일. 공교롭게도 풍력발전 관련 인허가가 진행되던 시기와 겹친다. 이날 한 일식당 만찬 초대 명단에는 김 씨 외에도 박▽▽ 당시 ◎◎부 차관이 있었다. 몇 달 뒤 열린 또 다른 모임에도 김 씨는 누군가와 함께 초대된다. ◁◁◁◁◁◁ 정책을 총괄하는 ▷▷▷ □□□□실로 파견 가 있던 ♡♡부 출신 김♤♤ 선임행정관이었다.
해상풍력업자 김 씨가 박 전 차관과 초대됐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보완 통보를 받고 본안 접수를 준비할 시기였다. 김 행정관이 초대된 때는 해역이용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이다. 한 씨가 주선한 자리에서 김 씨 사업에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김 씨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현재 ♡♡♡♡부 대변인인 김 전 행정관은 문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 어렵게 만난 김 대변인. 당시 모임에 한 참석자가 건네받았다는 자신의 명함을 제시하자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①

보도제목: [반론보도] 〈일사천리 해상풍력 사업 뒤엔 '수상한 사교 모임' 있었다〉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 언론사는 〈●●●〉 프로그램과 〈▲▲▲▲ 2부〉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 ①·②·⑥·⑦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행정관은 "본인은 ▷▷▷에서 ◁◁◁◁◁◁ 정책을 총괄하지 않았고, ♡♡부는 김 모 씨의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일반해역이용협의 의견을 X월 XX일 모임이 있기 전인 X월 X일 이미 회신하였으며, 당시 모임에서도 김 모 씨의 해상풍력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가 오간 기억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문 ②

보도제목: [반론보도] 〈사교와 로비, 그들은 왜 형제가 되었나〉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 언론사는 〈■■■■ ■〉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 ③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행정관은 "본인은 ▷▷▷에서 ◁◁◁◁◁◁ 정책을 총괄하지 않았고, ♡♡부는 김 모 씨의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일반해역이용협의 의견을 X월 XX일 모임이 있기 전인 X월

X일 이미 회신하였으며, 당시 모임에서도 김 모 씨의 해상풍력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가 오간 기억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방송사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상단에 반론보도문 ① 제목을 24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 ①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 ◇◇◇뉴스〉시사〉■■■■ ■ 섹션과 시사교양〉최신VOD〉다시보기 섹션에 반론보도문 ②를 자막으로 제작하여 조정대상보도 ④, ⑤ 조정대상영상 방송 말미에 삽입한 후 재업로드한다. 단, 반론보도문 ②의 제목과 본문은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하고, 시청자들이 멘트를 충분히 읽어볼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 조정대상보도 ②, ⑦의 각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 ①을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 조정대상보도 ④, ⑤의 각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 ②를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 〈◆◆◆ ◆◆◆◆〉 유튜브 채널에서 송출되는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영상에도 영상 말미에 반론보도문 ①을 자막처리하여 재업로드하고, 해당 영상 더보기란 최상단에 반론보도문 ①을 고정으로 배치하여 다시 게재한다.
- 〈◆◆◆ ◆◆◆◆〉 유튜브 채널에서 송출되는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영상에도 영상 말미에 반론보도문 ②를 자막처리하여 재업로드하고, 해당 영상 더보기란 최상단에 반론보도문 ②을 고정으로 배치하여 다시 게재한다.